

『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부포상, 장관표창, 도지사 및 시장표창에 대하여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토록 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.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적심사위원회 설치(안 제12조의 2)
 -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
- 조례 문구 및 용어 정비
 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

4. 참고사항

-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부포상, 장관표창, 도지사 및 시장 표창에 대하여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토록하여 공적사항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2조의2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」를 설치하는 것으로써,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,
- 조례상의 문구 및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3조에 의거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전문성을 갖춘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과 시민들이 알기 쉽게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,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